

2019년 세법개정안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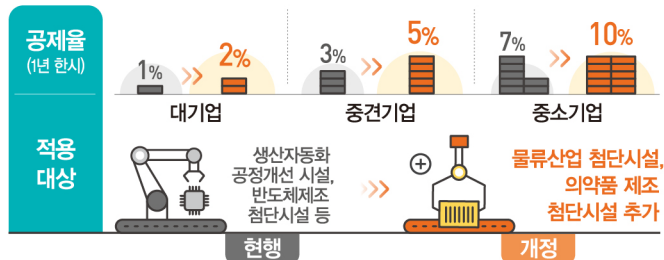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
투자활력 제고	일자리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소비·수출 활성화	서민 지원·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투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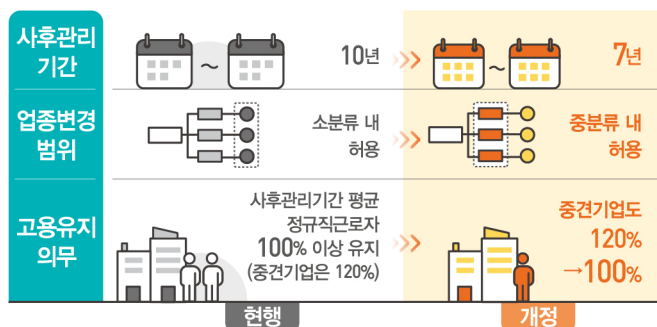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 기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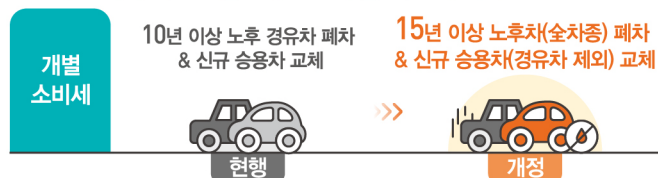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9월 중 시행 예정)



▶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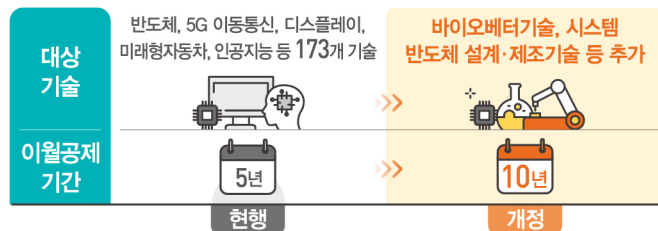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현행	개정
적용요건	최근 2년간 국제·관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시 적용대상 포함
신청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로 연장

혁신성장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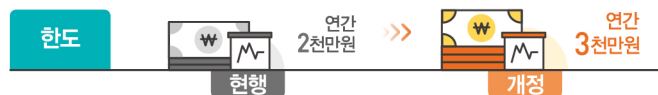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2019년 세법개정안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일자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단절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요건	동일기업	▶▶	동종업종
	현행		개정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 점증구간*의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 ▶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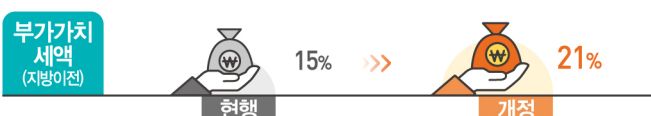
· 50세 이상자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한도 3년간 상향



·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시 세제혜택 확대



- ▶ 지방소비세율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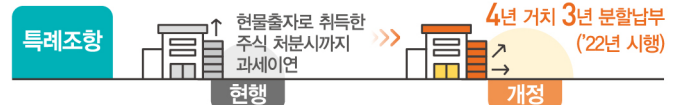


공정경제와 과세형평을 실현하겠습니다

- ▶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2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 ▶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 ▶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 ▶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세액감면율 축소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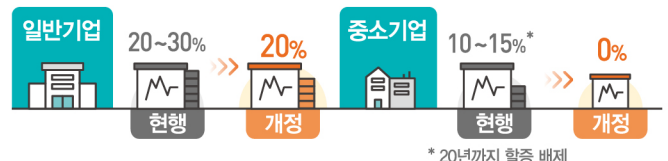
-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시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에 소득요건 추가

